

예 산 총 칙

2011년도 본예산

제 1 조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228,058,742	6,841,762
일반회계	221,820,602	6,654,618
특별회계	6,238,140	187,144
기타특별회계	6,238,140	187,144
상수도특별회계	2,812,595	84,378
항평공영터미널운영특별회계	53,487	1,605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1,005,455	30,164
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	850,020	25,501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110,000	3,300
주택관리사업특별회계	156,166	4,685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400,000	12,000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625,606	18,768
농어촌기반조성사업특별회계	168,392	5,052
기반시설특별회계	2,000	60
담수어양식사업특별회계	54,419	1,633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090,032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 한도액은 12,000,000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